

제208회 거창군의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5 ~ 5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1
2015 ~ 6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
----------	----------

제출연월일	2015. 2. 23.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거창군만의 독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공유(共有), 공유단체, 공유기업, 3대 사회적 의제

나. 공유 촉진 정책을 정함(안 제5조)

○ 공유영역 발굴·지원, 공유 단체·기업 육성·지원, 3대 사회적의제 추진

다.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공유촉진 지원계획 수립,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공유활동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라.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마.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지정 전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 공유단체기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지원 등

바.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5년 150백만원 예산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 20. ~ '15. 2.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의견반영함(제15조제3항단서)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3대 사회적 의제”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한 공유 프로그램 확산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군수는 공유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촉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공유참여 군민 모집,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치
 6. 공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7. 공유촉진 관련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촉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유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군민이 주도하는 과제 수행 등에 따른 보조금 등
- 관련조문 :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출	도비						
	군비	150	200	250	300	300	1,200
	소계(a)	150	200	250	300	300	1,20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 (a-b)		150	200	250	300	300	1,200

3. 관련 의견

- 군민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제도적 검토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조사업비 : 150백만원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
----------	----------

제출연월일	2015. 2. 23.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상면 내오리의 행정리명을 변경함(안 별표 2)

- 오산 ⇒ 오무

나. 웅양면 한기리의 행정리명을 변경함(안 별표 2)

- 장지 ⇒ 진마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 19. ~ '15. 2. 08.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상면 내오리란과 웅양면 신촌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주 상 면	내 오 리	2	<u>오무</u> , 오류동
용 양 면	신 촌 리	4	아주, 신촌, 왕암, <u>진마루</u>